

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수정합니다. 지적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.

**19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 (행정사 2019년)**

-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.
-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.
-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.
-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[정답]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(판례)  
나머지는 전부 판례의 내용으로서 옳바르다. 라고 해설하였는데 이는 잘못입니다.

[정답] ① 판례.

-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.
-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.
-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.
-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